

REPORT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전자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태윤희 | 태관세사무소 관세사

전기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태윤희
태관세사무소
관세사



1 자전거 산업의 변화와 발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자전거 등 친환경 개인용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으며 운동 효과도 있는 '자전거'가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꼽힌다. 더 나아가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E-bike)'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두 개의 바퀴가 앞뒤에 달려있고 발로 돌리는 페달과 뒷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된 형태의 이륜자전거를 의미한다.¹

바퀴는 흔히 2개이며 1개짜리나 3개짜리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자전거 형태에 전동기를 부착하여 전동기의 힘으로 인력을 보조해 주는 "전기자전거"가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교하여 전동기의 힘과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①페달(손 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구를 말한다.²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으로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 형과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페달보조)형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개인용 이동 수단 중 최근 주목받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품목분류(HS Classification)와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참고
2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관세율표에서의 HS분류 및 분류기준 해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분류되는 HS 제8712호가 아닌 '제8711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 그 밖의 자전거[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가 HS 제8712호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하지 않은 사이클, 즉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하는 이륜 자전거·삼륜 자전거·사륜 자전거)'고 설명하고 있다.

제8711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 배달용 삼륜 자전거, 2인승 자전거 등 여러 가지 특수 형식인 것도 포함한다. 경기용의 자전거(Racing bicycles)는 제8712.00-1000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삼륜 자전거(Tricycles)는 제8712.00-9020호에 분류된다.

다만 어린이용 완구 자전거는 제9503호에 분류

되며, 유원지용으로만 적합한 특수 자전거는 제9508호에 분류된다.

제8712호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모터를 부착하지 않은 사이클로 제8711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HS 제8711호에는 '모페드(moped)를 포함한 모터사이클과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side-car)³가 제8711호에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 스쿠터(motor-scooter);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 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영문 품명: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품목분류		품명	Description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8711	6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With electric motor for propulsion
8711.60	1000	모터사이클	Motor cycles
	9000	기타	Other

제8711호에서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모터사이클이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전기자전거는 제8711.60-9000호에 분류된다.



3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전기자전거가 분류되는 HS 제8711.60호에 대한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①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인 'CTH or MC5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4단위(즉, Tariff heading)와 전기자전거의 HS code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CTH or MC 50%
한-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 40%
한-베트남		
한-아세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RCEP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4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들의 가치가 제품인 전기자전거의 공장도가격(EXW; Ex-Works Price) 대비 50% 이하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즉, 한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CTH and RVC 4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4단위(즉, Tariff heading)와 전기자전거의 HS code 4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0%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 45%'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5%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4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0%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포장·취급이나 운송상의 요구·편의 같은 이유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핸드그립, Spoke 프로텍터, Rim, 스탠드, 전·후면 반사경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한 전 부품이 미조립 분해 상태로 수입되어,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조립하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완성품인 자전거로 품목분류 된다.⁴

이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으로 통칙 제2호 가목⁵에 따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미조립 분해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4 품목분류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79, 시행일자 2004-11-05 참고(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5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